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관

[시행 2019.4.30.] [2019.3.21. 제46차 대의원총회의결, 2019.4.30. 보건복지부 허가에 따른 제26차 개정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술과 지식습득을 도모하고 간호조무사 업무수행에 관한 편의와 권익을 옹호하며 회원 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사무소) ① 본 협회는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

②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5길 11 4,5층에 둔다.

제3조(사업) ①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 향상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제도 조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간호교육 발전 및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간호조무사 업무의 개선 및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5.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및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6. 간호조무사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7. 기관지 및 간호조무사 관계 서적 발간에 관한 사항
8. 간호조무사양성교육 평가기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간호조무사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및 면허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1. 대북 지원 및 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
12.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임대관련 사업
2. 사회복지관련 사업
3. 회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제휴 및 통신사업
- ③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관리자를 둘 수 있다.
- ④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 ⑤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충당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구성) 협회는 시·도회와 해외지부로 구성한다.

제2장 회 원

- 제5조(회원) ① 협회 회원은 대한민국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협회와 소속 시·도회의 회원이 된다.
- ② 회원은 각 소속 시·도회를 경유, 본 협회에 입회등록을 필해야 한다.
 - ③ 회원 등록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또는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협회에 대한 권리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 ③ 회원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소속 시·도회를 거쳐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취업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매년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8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간호조무사나 협회의 위상 제고 및 강화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로서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제9조(특별회원)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간호조무사에 해당하는
외국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협회에 입회등록을 한 경우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특별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①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서울 1명, 수도권 1명, 지방 2명,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장 1명,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회장 1명, 교육위원장 1명). 단,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장,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회장, 교육위원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3. 이사 40명 이내(회장, 부회장, 시·도회장, 상임이사 포함)
 4. 상임이사 15명 이내
 5. 감사 4명
- ② 효율적인 회무처리를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1명을 외부인사로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 선출) ① 회장단(회장 및 부회장)과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수석부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선출한다.
- ③ 외부 인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협회장은 시·도회 대의원총회 또는 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시·도회장에게 인준장을 교부한다.
- ⑤ 제44조 제2항에 의거 시·도회 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시·도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⑥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 중 상근하는 임원은 이사회 의결에 의해 유급으로 할 수 있다.
- ⑦ 임원의 피선거권 자격과 제1항의 회장단(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 ⑧ 상임이사는 회장단이 선출하며,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신임 회장단은 임기개시 전 상임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 ⑨ 시·도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⑩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장과 교육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 및 시·도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 중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 중임할 수 있다.

④ 회장단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4월 1일(시도회는 3월 1일)로, 당연직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선출일자부터로 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원의 보선) ① 회장의 유고 시 3개월 이내에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여야 하며, 회장임기가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일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임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가 결원되는 경우에는 회장단이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임된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를 처리한다.

④ 상근하는 임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할 수 있다.

⑤ 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은 없지만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⑦ 감사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정상적인 협회 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에 결격사유 배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사회는 해당 회원이 위 제1항 제3호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 등 해임) 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과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윤리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단, 정상적인 협회 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정관 및 제규정과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3.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② 위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에 결격사유 배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사회는 해당 회원이 위 제1항 제3호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회장에 대한 해임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과 윤리위원에 대한 해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임원에 대한 해임이 결정되면 그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제17조(명예회장) ① 협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임기 3년을 역임한 직전 회장으로 하고, 직전 회장이 없을 때에는 임기 3년을 역임한 전임 회장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추대한다.

③ 명예회장은 회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명예직으로 권리와 의무는 없다.

④ 명예회장은 협회 중대 현안문제에 대해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할 수 있다.

제18조(고문,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① 협회에 고문,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이사회가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무에 관여하지 않으며, 권리와 의무는 없다.

④ 고문,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위촉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대의원총회

제19조(대의원총회) ①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대의원총회 및 임시대의원총회(이하 '대의원총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3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정기대의원총회는 30일 전까지, 임시대의원총회는 10일 전(회장선거인 경우는 30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및 부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각 시·도회 및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제20조(대의원 등록) ① 대의원은 대의원총회 참석 시 의장이 교부한 인준장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도회는 대의원이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예비대의원이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대의원총회 개최 4일전까지 의장에게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예비대의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대의원총회 개최 3일 전까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 및 예비대의원에게 인준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의원총회 의결 정족수) ①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재적대의원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대의원 수로 한다.

③ 정관 개정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대의원총회에 출석한 상임이사 중 의장이 지정한 1명과 함께 서명하고, 다음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 회장단(회장, 부회장) 및 감사, 윤리위원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5. 임명직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6.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시·도회장 인준에 관한 사항
8. 자산에 관한 사항
9. 협회의 주요규정(윤리위원회규정, 감사규정, 선거관리규정 및 시·도회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10. 협회 예산을 사용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윤리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23조(의안) ① 시·도회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할 의안을 총회 개최 15일전 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안은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 제출한다.

③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4조(서면결의) ① 의장은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붙일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제5장 대의원

제25조(대의원 자격) ① 대의원은 정관 제7조 회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선출 직전년도까지 2년 연속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은 각 시·도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단, 당연직 대의원은 예외로 한다.

제27조(대의원의 정수 및 책정 방법) ① 대의원의 정수는 250명으로 하며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연직대의원은 정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정원으로 한다.

1. 고정대의원 : 시·도회 각 2명
 2. 비례대의원 : 대의원 정수에서 고정대의원수를 뺀 나머지 대의원수를 매 직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협회에 보고된 회원수(회비납부자)의 비율에 따라 배정
 3. 예비대의원 : 시·도회별로 순위를 정하여 대의원 정수의 20% 범위 내에서 선출
- ② 협회의 임원, 윤리위원(비회원 제외), 교육위원,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회의 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제28조(대의원의 임기와 권리의무) ①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회 선출 대의원(선출직 대의원)의 임기 : 1년으로 하며, 임기의 기준은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1년 후의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보선된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 : 해당 직책의 임기와 같으며, 기간은 임기를 시작한 날로부터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보선된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 ③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의원이 대의원총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총회 개최 5일 전까지 소속 시·도회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회장은 대의원총회 개최 4일 전까지 의장에게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예비대의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대의원 선출 결과 등 보고) ① 시·도회장은 대의원 선출결과를 시·도회 대의원총회 종료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도회장은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과 보선결과를 지체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장 및 부의장) ① 대의원총회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두되, 의장은 협회 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수석부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 부회장, 감사, 윤리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시의장이 된다.

- ②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회장, 부회장의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총회를 주재하고 회의질서를 유지하며,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참관권)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대의원총회에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을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 개최일 3일전까지 협회에 참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이사회

제32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시·도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3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4회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 회수를 정기이사회 회수에 포함시킨다.

제34조(이사회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회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및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이사회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협회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상임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
4. 대의원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5. 정관 및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대의원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7.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장 및 교육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8. 윤리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9. 고문,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10. 협회 목적달성을 위해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
11. 선거관리위원 추천 및 구성에 관한 사항
12. 시·도회 회칙 인준 및 시·도회 설치에 관한 사항
13. 사무총장 인준에 관한 사항
14.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7장 상임이사회

제36조(상임이사회) 협회 회무의 조속한 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제37조(상임이사회 구성과 의결)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회는 협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시책과 사업을 계획 집행하며 회장은 그 업무를 상임이사에게 분담하여 처리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총무, 기획, 학술, 재무, 법제, 공보, 사업, 정책, 국제 등
-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상임이사를 복수로 임명할 수 있다.
- ④ 상임이사회는 년 4회 이상으로 하며 임시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상임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⑤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8조(상임이사회 임무) 상임이사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3.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
4.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요청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39조(상임이사의 개별임무) 상임이사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이사
 - 가.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 나. 각종 행사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다. 각종 회의진행의 연구검토사항
- 2. 법제이사
 - 가. 정관에 관한 사항
 - 나. 제규정에 관한 사항
 - 다. 의료·보건관계 제 법규에 관한 사항
 - 라. 간호조무사 기강 및 윤리양양 연구에 관한 사항
- 3 학술이사
 - 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나. 간호조무사 발전에 관한 사항
 - 다. 간호조무사 교육 및 홍보책자 발행에 관한 사항
 - 라. 기관지 발행
 - 마. 회원의 자질향상 및 의식개혁 연구
- 4. 재무이사
 - 가. 예산안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나.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
 - 다. 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예산의 개정 예산의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
- 5. 사업이사
 - 가. 협회사업의 계획연구에 관한 사항
 - 나. 협회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다. 회원복지 및 권리에 관한 사항
 - 라. 공익성이 있는 특별사업에 관한 사항
- 6. 공보이사
 - 가. 정부가 추진하는 범국민운동에 관한 사항
 - 나. 협회보 출판업무에 관한 사항
 - 다.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
- 7. 기획이사
 - 가. 협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한 사항
 - 다. 기획업무에 필요한 조사연구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
- 8. 정책이사
 - 가. 단기 정책 현안에 관한 사항
 - 나. 간호조무사 양성 정책에 관한 사항

9. 국제이사

가. 협회 국제교류사업

나. 해외봉사사업

제8장 시·도회

- 제40조(시·도회의 명칭 및 사무소) ① 각 시·도회 명칭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약칭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광역시간호조무사회(약칭 ‘○○광역시간호조무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특별자치)도간호조무사회(약칭 ‘○○(특별자치)도간호조무사회’)라 칭한다.
- ② 각 시·도회의 사무소는 각 시·도청 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시·도회에는 각 시·군·구 분회 및 특별 분회를 둘 수 있다.

- 제41조(시·도회운영규정) ① 각 시·도회는 시·도회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각 시·도회는 정관 및 시·도회운영규정 범위 내에서 시·도회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42조(감사 실시) 감사는 매년 협회 및 시·도회의 재무 및 회무에 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43조(보고의무) ① 각 시·도회는 시·도회의 임원 선임 또는 소속분회의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협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각 시·도회는 회원의 정기 신고, 이동 상태 및 소원을 지체없이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각 시·도회는 임원명단,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 및 대의원총회 회의록을 시·도회 대의원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각 시·도회는 협회에서 지시한 제반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44조(지도와 감독) ① 각 시·도회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협회의 입회금 및 기타 부담금을 그 증빙자료와 함께 익월 10일까지 협회에 송금하되, 12월은 31일까지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협회 회장은 시·도회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시·도회 대의원총회 또는 회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협회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시·도회 대의원총회 또는 시·도회 회원총회를 소집하기 전까지 시·도회의 사고 해결을 위하여 임시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업무범위를 정하여 임시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임시관리인에게 이사회 의결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시·도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임시관리인은 업무수행에 대하여 매월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권한 위임) ① 회장은 제3조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각 시·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권한위임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윤리위원회

제46조(윤리위원회) ① 회원의 윤리향상을 위하여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7조(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원으로서 윤리위원 선출 직전년도까지 5년 연속 회비를 납부한 자로, 협회 및 시·도회 임원경력이 2년이상인 자.

2. 간호조무사가 아닌 자로서 법률, 보건의료, 언론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② 위원 중 1명은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임기 중에 있는 협회임원은 윤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윤리위원은 협회임원이 될 수 없다. 이 때 협회임원에는 시·도회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이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윤리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윤리위원 선출방법 및 자격, 윤리위원회 기능 등 세부사항은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회원의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를 결정한다.

1. 간호조무사로서 의료관계법규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때
2. 협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때
3. 협회 정관을 위반한 때
4. 협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기타 회원으로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협회임원 및 시·도회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를 결정한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회비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협회 및 시·도회 기능 및 운영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협회 감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였을 때
5. 대·내외적으로 현저하게 협회 및 시·도회의 체면을 손상한 행위가 있을 때

③ 징계에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은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포상) ① 협회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회원, 일반인 또는 시·도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윤리위원이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 대상자를 심사할 수 있다.

③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원의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자산 및 회계

제50조(자산 및 회계) ① 협회의 자산은 협회 소유동산, 부동산 및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협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부담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한다.

④ 기금을 용도에 따라 대외활동사업 및 교육관련사업을 위한 간호조무사발전기금과 회관건립기금을 신설하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전년도 적립된 입회비의 일부를 목적사업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⑤ 협회 및 시·도회의 재산을 매입·처분하거나 채무부담 행위를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과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 후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정관 변경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익성이 있는 특별사업을 할 수 있다.

제51조(예산 및 결산) ① 매년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매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사업실적을 감사의 감사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사업실적과 당해 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시기를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후로 조정할 수 있다.

제52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53조(임시지출) ① 예산의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사회 의결로 지출되 차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시·도회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재산의 명의와 관리는 시·도회로 하며, 협회 산하단체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명의를 협회로 한다.

③ 협회 재산목록은 <별표1>과 같다.

제55조(해산) 협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56조(잔여재산의 처분) ① 협회 해산 시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얻어 협회와 설립 목적이 유사한 법인에게 기부하거나 국가에 귀속한다.

② 시·도회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시·도회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회로

귀속할 수 있으며, 시·도회 해산 시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협회에 귀속한다.

제11장 사무처

제57조(사무처) ①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회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는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인사 및 복무, 급여, 직제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8조(사무총장의 임무) 사무총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지시 하에 본회 사무 일체를 책임 수행한다.
2.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집행한다.

제12장 협의회 및 위원회

제59조(위원회) ① 협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협의회 및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1.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2. 교육위원회
3.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0조(협의회 및 위원회 운영) ① 협의회 및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업무에 따른 보수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13장 보 칙

제61조(규정제정)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윤리위원회규정, 감사규정, 선거관리규정, 시·도회운영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

제62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평생회원 자격유지) 정관 제5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해 평생회비를 납부한 평생회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회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인정한다.

제3조(한시적 중앙회장의 임기 조정) 정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제20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에 한하여 그 임기를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4년으로 한다.

<별표1>

재산목록(정관 제54조 제③항 관련)

1. 기본재산

구분	부동산 소재지	규모 (m ²)	금액 (원)	비고
임차보증금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5길 11 3,4,5층	-	400,000,000	중앙회 및 서울사회 사무소
임차보증금2	<삭제>			
임차보증금3	<삭제>			
임차보증금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03-1, 2층(삼도일동)	-	10,000,000	제주도회 사무소
사무소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1305호(부전동, 신동아오피스텔)	87.4	100,000,000	부산사회 사무소
사무소2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9, 510호(오류동, 센트리아오피스텔)	75.5	52,000,000	대전충남 회사사무소
사무소3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9, 511호(오류동, 센트리아오피스텔)	46.2	40,000,000	대전충남 회사사무소
사무소4	강원도 춘천시 석사길5번길 19(석사동)	201.4	190,000,000	강원도회 사무소
사무소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 145번길 40(금천동)	344.8	75,596,400	충북도회 사무소
사무소6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 7 601호(영동프라자)	85.9	91,696,000	광주전남 회사사무소
사무소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89-1 뉴롯데오피스텔 1102호	30.0	39,850,786	전북도회 사무소
사무소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6길 7, 910호(더 테라스)	58.8	189,867,000	울산경남 회사사무소
사무소9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08, 904호(신성프라자)	129.5	210,800,000	경북도회 사무소
합 계			1,399,810,186	-

2. 보통재산

① 예금

(단위 : 천원)

사단법인	204,834
보수교육	1,041,118
입회비적립금	77,035
퇴직적립금(사단법인)	62,691
퇴직적립금(보수교육)	30,681
간호조무사발전기금	84,676
회관건립기금	661,085
간호조무사교육평가원설립기금	873,711
수익사업	235,530
임대수입	75,849
전문교육	809
교육원사업비	1
치매전문교육	94
근로조건개선사업	3,742
사회공헌사업비	18,913
집기비품	153,233
소계	3,524,002

*2018년 12월 31일 기준

[정관 연혁]

- 1974. 12. 24. : 최초 승인
- 1976. 4. 5. : 제1차 개정
- 1982. 3. 27. : 제2차 개정
- 1984. 3. 26. : 제3차 개정
- 1985. 4. 1. : 제4차 개정
- 1986. 6. 16. : 제5차 개정
- 1987. 6. 19. : 제6차 개정
- 1988. 4. 14. : 제7차 개정
- 1988. 12. 5. : 제8차 개정
- 1990. 4. 16. : 제9차 개정
- 1991. 6. 5. : 제10차 개정
- 1992. 4. 1. : 제11차 개정
- 1995. 5. 11. : 제12차 개정
- 1997. 4. 15. : 제13차 개정
- 1998. 4. 14. : 제14차 개정
- 1999. 5. 11. : 제15차 개정
- 2000. 4. 24. : 제16차 개정
- 2004. 6. 18. : 제17차 개정
- 2007. 10. 15. : 제18차 개정
- 2008. 9. 8. : 제19차 전면개정
- 2010. 6. 15. : 제20차 개정(1차 허가일 2010.5.26., 2차 허가일 2010.6.15.)
- 2012. 4. 15. : 제21차 개정
- 2013. 4. 15. : 제22차 개정
- 2016. 8. 17. : 제23차 전면개정
- 2017. 6. 1. : 제24차 개정
- 2018. 9. 21. : 제25차 개정
- 2019. 4. 30. : 제26차 개정